고흥군의회 공고 제2021-29호

「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○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,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회기 중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제도를 확대함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)

○ 회기 중으로 한정되었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항 삭제(안 제2조)

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
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・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직무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에 규정된 회기중 또는 법 제61조에 따라 개회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.	<삭 제>
2. 의정활동비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	2. -----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 -----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별지 제1호서식 (개정 2015.12.23.)

접수	제 호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			처리기간 15 일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생년월일		
청 구 자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□□□□□		전 화 번 호	
	청구내용	□사 망 □장 애 □상 해			
	보상금 수령 금융기관	은행 지점	계 좌 번 호		
상 병 장 소			상병연월일시		
상병원인 및 발생상황					

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인)

고흥군의회의장 귀하

첨부서류 1. 사망의 경우 :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, 사망진단서 1부
2.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경위서 1부, 장해진단서 1부
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, 장애, 상해 공통)

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 직인

고 흥 군 수 귀하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